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3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8.09.27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달영, 최영준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방음벽 설치 장소 중앙분리대 옹벽을 경계로 작업자 이동이 있으나 통로가 없으니 조치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수락고가차도 교각 작업장의 철근절곡기가 비상정지스위치가 없으며, 제원표시가 없으니 검토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2(철근절단기 및 절곡기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방음벽 작업장의 발전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접지 요하며 접지 저항 측정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9(이동식 발전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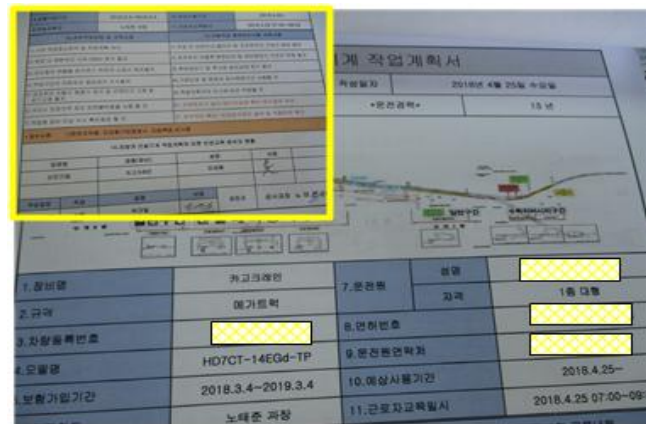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방음패널 설치 작업시의 추락 및 낙하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추락 및 낙하재해 방지대책을 검토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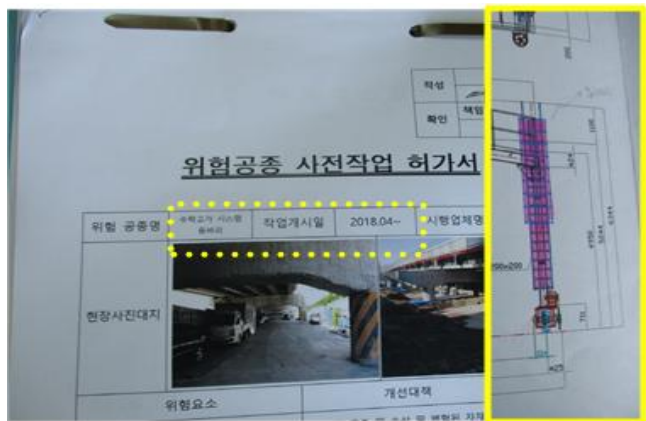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방음벽설치 장소는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완전인출할수 없는 현황이며
- 작업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 및 정격총중량, 줄걸이등 중량작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으니 검토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○ 위험공중 사전작업 허가제(토목부)

- 방음벽 설치구간은 높이가 6m이상의 고소작업이며, 차량통행이 많은 곳, 양중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작업임에도 위험공중 사전작업 승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 위험작업은 승인후 작업 요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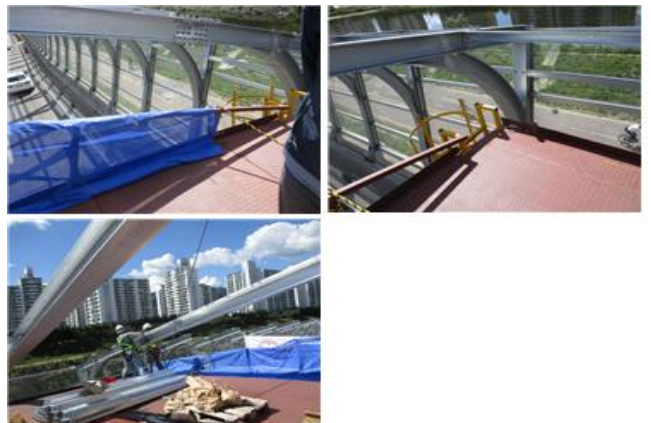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방음벽설치 구간 of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작업대에서 2명의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는 중이나, 생명줄이 작업대에 연결되어 있어 작업대 탈락시 작업자가 동시에 추락할수 있으니 작업대에 고정하지 않도록 관리하고
- 생명줄이 길어 최하사점보다 생명줄의 길이가 길수 있으니 작업높이를 고려한 길이 조정을 요함.
- ※ 산업안전기본지침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37(고소작업대(차량 탑재형)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방음벽설치 구간 작업대차 상부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수평생명줄이 길고, 방음벽이 낮은 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낮으므로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수평생명줄을 최하사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고
- 수평생명줄에 의해 다른 작업자가 전도 및 이로 인한 추락재해로 이어질수 있으니 수평생명줄 고정위치 및 설치 방법을 검토 요함.
- ※ 산업안전기본지침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방음벽 작업대차의 안전난간 및 낙하물방지망이 낮은 곳은 수직사다리 높이가 낮고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조치 요함.
- ※ 산업안전기본지침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방음벽지지 프레임을 설치하는 작업자들이 유도로프없이 볼트접합부에 자재를 결속하고 있어 협착, 전도재해 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안전한 양중 방법을 검토 요함.
- ※ 산업안전기본지침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방음벽 작업대차의 안전난간 및 낙하물방지망이 낮은 곳은 동부간선도로의 차량통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낙하물방지망 추가 설치를 고려 요함.
- ※ 산업안전기본지침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방음벽설치 작업대차 상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센트 접지선이 단락되어 있어 근로자 감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
- 용접 어스선 홀더가 노후되어 있으니 교체를 실시하기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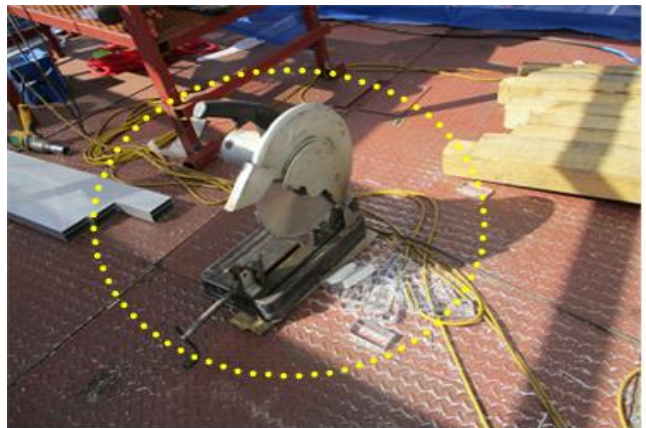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8(기계·기구 접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방음벽 설치구간 의정부 방향 작업대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속절단기는 하부에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 설치, 소화기를 배치하고 작업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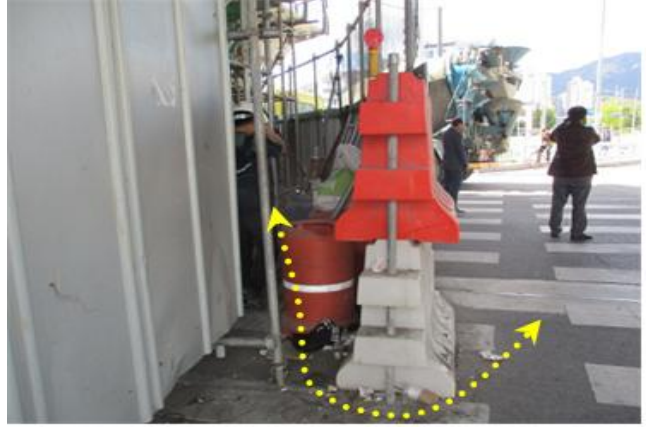
- 수락고가 작업장 하부에 원형 유류통이 전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 작업자와 충돌우려가 있으니 위험물보관소에 이동 보관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수락고가 하부 횡단보도와 인접한 작업장 출입구 주변은 작업중 또는 작업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수락고가차도 교각 P4 코핑 일부 및 교각점검 시설이 손상되었으니 안전성 확인 후 필요시 보강 요함.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수락고가차도 교각 P4 기존 PF 빔 지점부에 손상부가 있으니 기존에 손상된 것인지 공사로 인하여 손상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조치 요함.
- 수락고가차도 신설 PF 빔에 거푸집 고리가 제거되지 않았으니 조치 요함.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수락고가차도 P4 교각점검시설 앵커볼트너트가 나사산이 부족하니, 재설치시 이를 고려하여 간격재 삽입 등을 검토하기 바람.
- P4 무수축물탈 손상부 검토 후 필요시 조치 요함.

